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0호로 2020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안 제7조의2)

-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하여 감면을 및 감면기한을 조례에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변경 규정 반영(안 제5조)
- 조례상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범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안 제7조의2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받아 왔으나, 2020. 7. 1.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점이 도래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 지정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구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장기간 재산권에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